#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(안)
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학칙 제35조(석·박사학위 종합시험 및 졸업시험) 및 학칙 시행세칙 제7조(외국어시험)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외국어시험)

①일반대학원 석·박사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. 다만,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학과 및 전공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영어시험과 제2외국어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제2외국어 과목은 독어, 불어, 일어, 중국어, 스페인어, 한문, 러시아어로 하며, 제2외국어시험 실 시학과는 국어국문학과, 영어영문학과, 독어독문학과, 중어중문학과, 사학과, 철학과, 프랑스언어· 문화학과, 문화인류학과, 법학과로 한다.

③외국어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, 외국어시험 신청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이를 미납할 경우 외국어시험 신청이 취소된다.

④재학생 및 수료생은 신청가능하며, 휴학생은 신청하지 못한다.

#### 제3조(외국어시험 면제 기준)

①매학기 지정된 기간 안에 공인기관 영어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해당 학기의 외국어시험의 영어 또는 한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며,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다. (개정 2013. 8. 21)

계열	TOEIC	TOEFL				G-TELP			GRE		
		PBT	CBT	IBT	TEPS	Level 2	Level 3	IELTS	(verbal reasoning)	GMAT	TOPIK
공 학 의 학 자연과학 인문사회	730	550	213	79	605	67	89	6	150	590	4급
예 체 능	590	500	173	61	468	50	69	5	140	400	

②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 중,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공인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신청절차를 완료한 경우, 영어시험을 면제한다. (개정 2013. 8. 21)

③국제교육원의 대체어학강좌를 수강하여 합격한 경우, 영어시험을 면제한다.

## 제4조(대체어학강좌)

①대체어학강좌는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가 중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.

②대체어학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 중 영어시험을 1회 이상불합격한 자에 한한다. (개정 2016.11.18)

## 부 칙

1.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 (2013. 01. 04 공포)

2.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 (2013. 08. 21 공포)

3.(시행일) 이 내규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 (2016. 11. 18 공포)